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58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김현희, 송순효, 황영호, 김선경,
박성호, 신낙형, 이의걸, 송영섭,
박주선, 이종숙, 김성한, 경기문,
정정희, 황동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우리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의료비 신규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용품 지원 중단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내용 개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2018년도 7월부터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우리구 첫째아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자 관련 조항 삭제

- 첫째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내용 신설(첫째 10만원)
- 둘째아 이후 출산양육지원금 증액(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50만원→100만원, 넷째 70만원→1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200만원)

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 제한 폐지 (안 제3조)

- (현행)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거주 → (변경) 신생아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다. 다자녀가정 정의 및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신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다자녀가정의 만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진료받을 시 발생하는 일정 금액’을 다자녀가정 의료비로 정의
- 의료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부모로 정하며, 대상 자녀가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 한정
- 의료비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시 발생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되,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가 목적인 의료비로 한정

라. 출산양육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확대 (안 제3조)

-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속하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정함

마. 의료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안 제5조)

- 의료비를 지원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지원 중단

바.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반영(1,597백만원) 필요

(1,597백만원 = 1,334백만원(출산양육지원금)+263백만원(의료비))

※ 2018년 출산양육지원금 929백만원(출산축하용품 포함)

다. 합 의 : 여성가족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0. 29. ~ 11. 3.) 결과 : “의견 없음”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붙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④ 다자녀가정 의료비(이하 “의료비”라 한다)란 다자녀가정의 만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기간동안”을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다자녀가정의 부모로 한다. 단, 대상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는 영유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에 속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제1항 중 “둘째아이는 30만원만원 이하”를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으로, “50만원 이하”를 “100만원”으로, “70만원 이하”를

“15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를 “200만원을 1회”로, “쌍생아인 경우에는”을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료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요양기관에 진료 시 납입한 진료비 및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한정한다.

제5조 중 “경우에는 제4”를 “경우, 또는 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제4조”로 하고, “중단할 수 있다.”를 “중단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제4”를 “제4조”로, “출산양육”을 “출산양육지원금 및 의료비의”로 한다.

제7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출산양육지원금을”을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의료비를”로 한다.

제8조 중 “출산양육지원에”를 “출산양육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에”로, “출산양육 지원대장”을 “지원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출산양육지원금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조례 시행 전인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은 2019년 1월 1일 기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생 략)</p> <p><u>②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u>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기간동안</u>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p> <p><u>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첫째 아이의 부모로 한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③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u></p> <p><u>④ 다자녀가정 의료비(이하 “의료비” 라 한다)란 다자녀가정의 만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① ----- -----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 ----- ----.</p> <p><u><삭 제></u></p> <p><u>③ 의료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다자녀가정의 부모로 한다. 단, 대</u></p>

<신 설>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이는 30만원만원 이하, 셋째아이는 50만원 이하, 넷째 아이는 70만원 이하, 다섯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이하 지원하며, 쌍생아인 경우에는 개별 지원한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영아 기준으로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상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는 영유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에 속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지원기준) ① -----
-----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 100만
원----- 150만원-----
----- 200만원을 1회---
---,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

<삭 제>

③ 의료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요양기관에 진료 시 납입한 진료비 및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중단)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4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등) 제4의 규정에 의한 출산양육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출산양육 지원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중단) -----

----- 경우, 또는 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제4조-----중단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 제4조----- 출산양육지원금 및 의료비의 -----.

제7조(환수조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의료비를 -----.

제8조(대장관리) ----- 출산양육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에----- 지원대장-----.

【관계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